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7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 : 강동길, 경기문, 김성준, 김용일, 김원태, 김춘곤, 김형재, 민병주, 박영한, 유정인, 이민옥, 이영실, 이종태, 임종국, 최민규, 홍국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,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의 해제동의 비율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,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 비율을 70%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.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의 직권해제(안 제14조의2)

나.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(안 제15조제3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ㅇ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ㅇ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

ㅇ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의 직권해제)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2분의 1을,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3분의 2를 말한다.

제1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: 70퍼센트 이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된 정비구역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의 직권해제)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2분의 1을,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3분의 2를 말한다.
제15조(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<신 설> ④ ~ ⑩ (생 략)	제15조(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: 70퍼센트 이내 ④ ~ ⑩ (현행과 같음)